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 경위

- 가. 발 의 자 : 박진형 의원외 10명
- 나. 의안번호 : 제1065호
- 다. 발의일자 : 2016. 3. 21.
- 라. 회부일자 : 2016. 3. 24.

2. 제안 사유

- 전체 서울시 도로연장(8,214km)과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규모(748,655대)를 고려하면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위반차량 단속 지점수(19개소)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장착이후 전자태그에 대한 손·망실 정도, 실제 부착 및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되지 않고 있는 등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나 관련 혜택은 과하게 제공되어 왔음.
- 결국 지난 2015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을 제한한 바 있음.

- 이와 더불어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이 담보될 때까지 서울시에서 제공해왔던 승용차요일제 참여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혼잡통행료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줄여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승용차요일제 참여 촉진을 위한 혜택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자동차세 5% 감면’을 삭제함(안 제9조)

4.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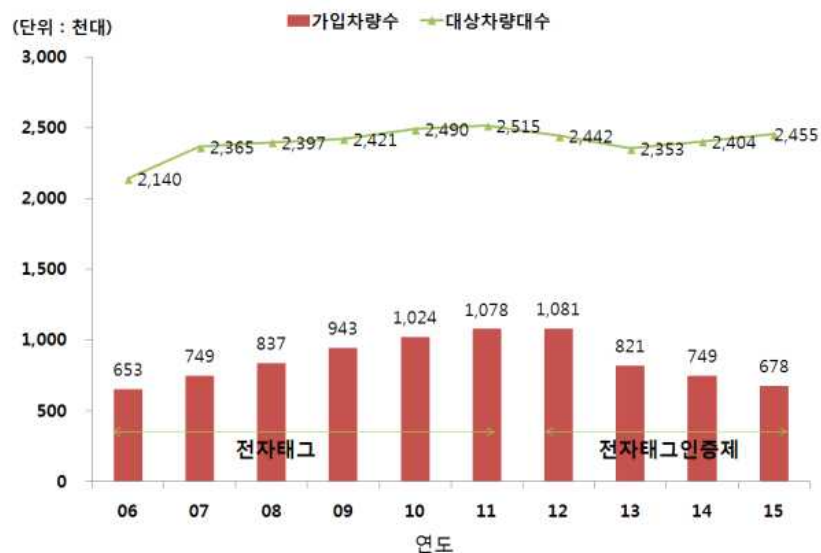
5. 검토 보고

가.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혼잡통행료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을 폐지하여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승용차요일제는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도심의 교통문제 해소, 에너지절약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목적으로 2003년 7월에 도입된 것으로,
 - 2015년 12월 현재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은 승용차등록대수 245만대의 27.6%에 해당하는 678만대로 2012년도를 기점으로 가입률 및 가입차량대수가 감소하고 있음.



〈그림 1〉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 현황

-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은 가입과 함께 자동차세 5%감면 혜택을 주고, 운행중에는 공영주차장, 혼잡통행료 감면,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시 가점부여, 이밖에도 민간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주유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승용차요일제를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금¹⁾감면 혜택을 주고 있음.

〈표 2〉 승용차요일제 참여에 따른 혜택

구분	혜택	세부내용	비고
공공부문	자동차세	5% 감면	가입시 혜택
	혼잡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20~30% 감면	시설물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가점부여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20% 감면	
민간부문	주유요금할인	l 당 10~40원 할인	민간참여업체
	세차비 할인	무료 또는 할인	
	자동차정비공임	5~10% 할인	
	기타할인	식당 등 3~10%할인	
	자동차보험료 할인	OBD 장착차량 8.7%	

〈표 3〉 승용차요일제 참여에 따른 공공부문 감면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30% 감면)	혼잡통행료 (50%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20% 감면)
2011년	9,744	159	730	1,073
2012년	9,110	173	693	1,061
2013년	7,695	230	603	1,038
2014년	6,592	237	514	992
2015년	5,687	277	470	790

1)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혜택이 아니며, 주차부제('승용차요일제')를 운영하는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것임

- 승용차요일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시장방침으로 시민참여운동의 형태로 추진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먼저 제정된 후²⁾(2015.4.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반영된 경우라 할 수 있음.
-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효과분석 및 장기추진전략 수립용역」 결과, 승용차요일제 실시에 따른 교통량감축효과는 1.1%로 나타났고, 아파트 지역의 표본 조사에서는 전자태그부착률 45.7%, 준수율 57.1%로 나타나 교통수요 관리 측면에서 효과가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10년간의 비용/편익(B/C)분석에서는 10.1로 나타나 투자된 비용대비 편익효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편익은 서울시 전체 교통혼잡비용의 1.9% 수준임.
- 연구용역결과에서는 제도개선을 통한 승용차요일제의 실질참여 유도방안(대안1)으로 홍보 및 모니터링 강화, 인센티브제도 개선, 통행거리기반의 교통수요관리전략 연계방안(대안2)으로 「마일리지보험 자동차보험 연계」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서울시에서는 자동차세 5% 감면혜택 폐지, 전자태그갱신제, 고정형 RFID 리더기 추가설치, 교통단속 CCTV활용 등의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승용차 마일리지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³⁾을 진행하고 있음.
- 개정조례안은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이 담보될 때까지 서울시에서 제공해왔던 승용차요일제 참여에 따른 혜택을 줄여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2) 서울시에서는 2015. 4.2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

3) 1차 시범사업결과 참여차량의 일평균 주행거리가 감소(28.7km → 24.4km)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2차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임.
- 자동차세 5% 감면조항은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에서 금년말로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삭제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나, 주차요금, 혼잡통행료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은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혜택을 폐지하기보다는 가입차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4)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은 경기도,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고 있어 타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관 계 법 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9., 2011.5.19., 2013.5.22., 2015.7.24.>

1.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1의2.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에 관한 사항

2.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수요관리

4. 승용차공동이용 지원

5.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6. 원격(遠隔) 근무와 재택(在宅) 근무 지원

7.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8. 그 밖에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하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자동차의 운행제한)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1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목적, 기간, 대상지역, 자동차의 종류·용도·사용목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승용차부제)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오염의 개선을 위하여 관할하는 전체 지역 또는 일부지역에서 주민이 스스로 정한 요일 등 특정한 날에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민실천운동(이하 "승용차부제"라 한다)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참여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승용차부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6조(혼잡통행료의 감면) ① (생략)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09.9.29., 2013.10.4.>

1. 제2조제3호가목 중 제3종 저공해자동차 및 나목의 자동차 중에서 시장이 저공해자동차로 인정하는 자동차(전자태그 부착 자동차에 한함)
2.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중 운휴일을 준수한 자동차(전자태그 부착 자동차에 한함). 단, 연간 3회 이상 미준수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6조(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라 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특정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2.3.15., 2016.1.7.>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는 이를 추징한다.

1.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3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5.(생략)

6. 시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과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가.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나.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3회 이상 운휴일을 위반한 경우

다.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이하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감축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경감비율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비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

③ 하나의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의 경감비율은 영 별표4(비고1)의 산식에 따른다. 다만, 종사자와 이용자가 참여하는 승용차 부제 운영이 다른 경우 해당 감축프로그램별 경감비율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13.8.1., 2014.5.14., 2015.10.8.>

④ 제3항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이 부담금의 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9.9.29.]

제8조(교통량감축기간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감축프로그램은 매년 8월1일부터 다음 해 7월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기간"이라 한다)의 기간 중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때에는 8월 1일 이후에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8.1.>

③ 교통량감축기간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다만, 주차유도시스템과 같이 1회성 시설물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대수는 1대로 본다. <개정 2013.8.1.>

1. 승용차 요일제·5부제 및 2부제

가. 승용차 요일제·5부제 : 주차면수의 4퍼센트 이내

나. 승용차2부제 : 주차면수의 10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3. 주차장 유료화 :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제6조 제1항 관련)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승용차부제	요일제 종사자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일제 전자스티커(RFID)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요일 부착 차량의 운행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5부제 종사자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요일제 참여차량의 부제해당일 출입시 예외인정 											
	2부제 종사자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의 짝홀수가 불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홀수날 : 홀수차량 운행 / 짝수날 : 짝수차량 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내 										
주차수요관리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관내(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업,단체 등의 소유 승용차는 제외하며, 무료주차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 주차요금 수준(a) 및 경감률(b) 주차요금 수준(a) : 시설물주차요금 / 시설물 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10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a≥100%</td> <td>a≥110%</td> <td>a≥120%</td> <td>a≥130%</td> </tr> <tr> <td>경감률(b)</td> <td>10%</td> <td>15%</td> <td>20%</td> <td>30%</td> </tr> </table>	구분	a≥100%	a≥110%	a≥120%	a≥130%	경감률(b)	10%	15%	2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내
	구분	a≥100%	a≥110%	a≥120%	a≥130%								
	경감률(b)	10%	15%	20%	30%								
주차장 축소 종사자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 주차장 축소 (최소 10면 이상) 경감산정 : 부담금 20% 범위내 주차면수 축소비율만큼 경감 주차면수 축소비율 = $\frac{\text{변경 전 주차면수} - \text{변경 후 주차면수}}{\text{변경 전 주차면수}}$ ※ 주차장 축소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3년까지 경감 주차면수 "0" 인 시설의 경우 부담금 20%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주유 시스템 종사자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유도관리시스템, 주차자동안내시스템 등 설치, 운영 ※ 주차유도관리시스템 등 시설물 설치비용 당해 연도만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내 											
자전거 이용 종사자 (100인이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소속 종사자 최소 5% 이상 (종사원 100인 이하는 최소 5명 이상) 참여 경감산정 : 부담금 20% 범위내 소속종사자 참여비율에 따라 경감 자전거 이용률 = $\frac{\text{자전거 이용 종사자수}}{\text{총 종사자수}}$ ※ 참여 종사자수에 비례하여 자전거 보관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유연 근제 종사자 (100인이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사자의 30%이상이 시차출근(09:00시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 나게 출근시간 조정) 참여,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및 재택근무 실시 ※ 단, 시설물 업무특성(오픈시간)으로 출근시간이 조정된 경우 제외 경감산정 : 1시간 차이마다 부담금의 100분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통근버스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금의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운영	(100인 이상)	<p>교통수단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감산정 : (총 좌석수 ÷ 총 종사자수) × 2 × 100의 비율 ※ 출근 또는 퇴근에만 운영시 경감률은 100분의 50만 적용 	100분의 25 범위내												
셔틀버스 운영	종사자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교통을 이용한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기업체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 제공 경감산정 = 기본비율(5%) + 운영비율(10%) - 일평균 총 운행횟수 : 운영 노선수 ∑ (운행대수 × 운행횟수) <table border="1"> <thead> <tr> <th>일평균 총운영횟수</th> <th>10회 이상</th> <th>20회 이상</th> <th>30회 이상</th> <th>40회 이상</th> <th>50회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경감률</td> <td>2%</td> <td>4%</td> <td>6%</td> <td>8%</td> <td>10%</td> </tr> </tbody> </table>	일평균 총운영횟수	10회 이상	20회 이상	30회 이상	40회 이상	50회 이상	경감률	2%	4%	6%	8%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금의 100분의 15 범위내
일평균 총운영횟수	10회 이상	20회 이상	30회 이상	40회 이상	50회 이상										
경감률	2%	4%	6%	8%	10%										
업무시제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 회사가 정산 경감산정 : 실제 사용금액(부담금 20%범위내. 월별정산) ※ 월별정산 내역을 교통카드사 등으로 부터 증빙서류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기타	종사자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 날, 배송시스템 개선, 시설물주변 교통환경 개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내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